



2014 한국 종합 사회 조사 프로빙지침서

2014. 6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1 / 전화 : 02-760-1270 / 팩스 : 02-744-6169

이메일 : srckgss@skku.edu 홈페이지 :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목 차

I. 2014 KGSS 설문 구성

1. 설문 내용 요약 1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2

II. 2014 KGSS 설문문항별 유의사항

1. 반복핵심 설문 3
2. ISSP 「시민권 II」 설문 모듈 11
3. 특별주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모듈 설문 11
4. 특별주제 「위험사회(Risk Society)」 모듈 설문 12

[부록]

1. 2014 KGSS 주요일정 14
2. 현장조직 연락망 15
3. 2014 KGSS 조사구 목록 16
4. 소득 분류 표 17
5. 산업 분류 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17
6. 직업 분류 표(ILO, 『ISCO 1988』) 19

2014 KGSS 설문 구성

1. 설문 내용 요약

『2014 KGSS』는 크게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그리고 ‘특별주제모듈 I, II 조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되는데, 각 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2014 KGSS 설문구성

조사내용	설문문항
반복핵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 (경제) 경제만족도, 응답자의 경제상태 및 경제전망, 한국의 경제전망 등 ○ (사회)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 ○ (배경변수)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구형태, 전체자녀수,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ISSP모듈 조사 (시민권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덕목, 시민의 권리, 정치적 관용도, 매체를 통한 정치뉴스 접촉정도, 사회단체 참여여부 및 활동정도, 정치적 참여의사 및 참여여부 ○ 정치적 효능성, 정치인에 대한 의견 및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국제 기구,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부정부패 만연 정도,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평가 등

<앞의 표 계속>

조사내용	설문문항
<p><u>특별주제모듈 조사 I</u>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차별, 부패,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정부의 역할, 계급갈등 인식,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사회이동, 소득 정당성, 사회에 대한 이미지 등
<p><u>특별주제모듈 조사 II</u> (위험사회(Risk Socie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관련 위험 ○ 건강 관련 위험 ○ 생애주기 관련 위험 ○ 사회생활 관련 위험 ○ 경제생활 관련 위험 ○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 환경 관련 위험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설문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문 문항별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면접원은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 설문 진행 및 응답 기입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II. 2014 KGSS 설문문항별 유의사항

1. 반복핵심 설문

반복핵심 설문이란 KGSS조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설문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상을 연도별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면접원은 반복핵심설문의 각 질문에 대해서 유효한 하나의 응답을 얻어내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물론 다른 질문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복핵심 설문에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해 할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다른 가족원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는 것이다. 면접원은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여,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복핵심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u>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u> <p>◇ 프로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정부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11~1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11>: 현재(2014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12.1>: 2014년 6.4지방선거시 투표한 후보 - <문항13>: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 (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2-1>의 응답보기 (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프로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1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사회복지지출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프로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은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 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복지지출은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 연금,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 ※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 조세 수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
38	<p>◇ 프로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對外援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과 그 국민을 위한 자본·상품·용역의 국제적 공여. 공식적인 대외원조에는 첫째, 무상원조나 차관과 같은 현금 등의 자본공여, 둘째, 대개 인적 자원이나 기술설비의 형태로 증여되는 기술원조와 기술교육의 2가지가 있다. 정상적인 경제원조는 원조대상국이 일정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단계에 도달하면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9	<p>◇ 프로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UN은 2015년까지 대외 원조를 국민총소득의 0.7%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48	<p>◇ 프로빙</p> <p>▶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p> <p><포함대상></p> <p>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p> <p>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p> <p><제외대상></p> <p>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휴인 요양원 등에 거거 중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p> <p>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p> <p>-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p> <p>-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p>
49	<p>▶ 별거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임</p> <p><포함대상></p> <p>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p> <p>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p> <p><제외대상></p> <p>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p>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p> <p>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50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 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일반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
5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문항 48, 49, 50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u>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u>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응답자와의 관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41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51계속>	<p>● 취업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u>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u> <p>● 미취업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p>(01)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 사유를 말함 (사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안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p>
52	<p>◇ 가구주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u>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u>
53~56	<p>◇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u>입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u>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57, 59	<p>◇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 질문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p>◇ 프로빙: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50.15(배우자 52.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p>☞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p>
57.1 59.1	<p>◇ 프로빙: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p>☞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p>
57.2 57.9 59.2 59.8	<p>◇ 프로빙: '중사상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u>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u>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u>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u>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u>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57.2 57.9 59.2 59.8 계속>	<p>※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p> <p>-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p> <p>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 근로자로 분류</p> <p>-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a)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b)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57.3 57.10 59.3 59.9	<p>◇ 프로빙: '근로시간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7.6 59.6	<p>◇ 프로빙: '기업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p>- 단, 국·공립 학교는 정부에 해당됨</p>
57.14 59.12	<p>◇ 소득 관련 질문의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58, 60	<p>◇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p>◇ 프로빙: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61	<p>◇ 가구소득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 때는 '자녀분들이 후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2. ISSP 「시민권 II」 설문 모듈

전세계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공동 조사하는 ISSP의 2014년 모듈은 ‘시민권 II (Citizenship II)’이다.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의 덕목, 시민의 권리, 정치적 관용도, 매체를 통한 정치뉴스 접촉정도, 사회단체 참여여부 및 활동 정도, 정치적 참여의사 및 참여여부와 관련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다음은 ISSP 「시민권 II(Citizenship II)」 모듈 설문 문항별 내용 및 주의사항이다.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63	<p>◇ 프로빙</p> <p>● 종교적 극단주의자</p> <p>- 특정 종교에 근거하여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태도를 종교적 극단주의라 하며, 종교를 앞세운 폭력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Ku, Klux, Klan) 등</p>

3. 특별주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모듈 설문

특별 주제모듈은 반복핵심설문, ISSP 모듈 이외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특별히 관심 갖는 연구 내용에 관한 조사이다. 2005년 「불평등과 공정성 IV」, 2007년 「문화 산업과 소비」, 2009년 「불평등과 공정성 V」 및 「정신건강과 자살」, 2010년 「국가정체성과 이민 I」, 2011년 「시민권」 「인권」 「연령주의」, 2012년 「한국인의 인터넷/SNS 이용 및 중독」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3년 「위험사회 (Risk Society)」 「한국인의 인터넷/SNS활용」 「한국인의 일자리 선택과 직업 가치」 「한국인의 노동가치」 등 이다. 2014년에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과 「위험사회 (Risk Society)」이다.

먼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조사는 정부의 역할, 계급갈등 인식,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사회이동, 소득 정당성, 사회에 대한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91	◇ 성공 요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여러 사항들이 각각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임. 성공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응답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 ◇ 프로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연고: 연고(緣故)란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또는 인연을 말함. (예: 학연, 지연, 깊은 연고를 맺다.)
92	◇ 사회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해 묻는 질문임.
98	◇ 프로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경영하는 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다.

4. 특별주제 「위험사회 (Risk Society)」 모듈 설문

「위험사회 (Risk Society)」에 대한 조사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 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그리고 환경 관련 위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면접원은 「위험사회 (Risk Society)」 모듈 설문을 빠짐없이 꼼꼼히 읽고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현지 조사에 임해야만 막힘없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모듈에 대한 설문 문항별 내용 및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프로빙 및 유의사항
102~105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프로빙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프로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물질을 말함 ※ 예: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핵분열생성물,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뿐 아니라 실험이나 작업에 사용된 공구, 형검, 종이, 세척수 등

부 록

1. 2014 KGSS 주요일정

구분	내 용
1월	- 01일(일) ~ 31일(화) : 2013 KGSS 조사팀장 모집 및 등록 [SRC & 조사팀장] - 05일(목) : 표본추출(조사구 선정) [SRC]
2월	- 21일(금) ~ 22일(토) : 조사팀장 1차 워크숍 [SRC & 조사팀장] - 23일(일) ~ (계속) : 표집틀 작성[조사팀장] - 23일(일) ~ (계속) : 면접원 모집 및 등록 [조사팀장 & 면접원]
3월	- 01일(금) ~ 31일(일) : 표집틀 미비점 보완 및 조사가구 선정 [SRC & 조사팀장] - 17일(월) ~ (계속) : 면접원 모집 및 등록 [조사팀장 & 면접원]
4월	- (계속) ~ 30일(화) : 면접원 모집 및 등록 [조사팀장 & 면접원]
5월	- 10일(토) ~ 11일(일) : 조사팀장 2차 워크숍 [SRC & 조사팀장] - 17일(토) ~ 5월 31일(토) : 사전조사 [SRC & 조사팀장]
6월	- 21일(토) ~ 22일(일) : 전체 면접원 오리엔테이션 [SRC & 협력교수 & 조사팀장 & 면접원] - 22일(일) ~ (계속) : 본조사 [SRC & 조사팀장 & 면접원]
7월	- (계속) ~ 13일(일) : 본조사 [조사팀장 & 면접원] - 14일(월) ~ (계속) : 전화/확인조사 [SRC] 및 보충조사 [조사팀장 & 면접원] - 14일(월) ~ 31일(목) : 보충조사 [조사팀장 & 면접원] - 01일(화) ~ (계속) : 설문 검표 및 코딩
8월	- 01일(금) ~ 31일(일) : 보충조사 [조사팀장 & 면접원] - (계속) ~ 31일(일) : 전화/확인조사 [SRC] 및 보충조사 [조사팀장 & 면접원] - (계속) ~ 31일(일) : 설문 검표 및 코딩
9월	- 27일(토) ~ 28일(일): 조사팀장 3차 워크숍 [SRC & 조사팀장] - 01일(월) ~ 30일(화) : 데이터 편칭
10월	- (계속) 확인조사 및 미비점 보완
11월	- (계속) 확인조사 및 미비점 보완
12월	- (계속) ~ 30일(화) : 전화/확인조사 및 미비점 보완 [SRC & 조사팀장] - 1일(월) ~ 1월 31일(토) : 데이터 클리닝

2. 현장조직 연락망

- 비공개

3. 2014 KGSS 조사구 목록

- 비공개

4. 소득 분류 표

(00) 소득없음	(06) 250 ~ 299만원	(12) 550 ~ 599만원	(18) 850 ~ 899만원
(01) 50만원 미만	(07) 300 ~ 349만원	(13) 600 ~ 649만원	(19) 900 ~ 949만원
(02) 50 ~ 99만원	(08) 350 ~ 399만원	(14) 650 ~ 699만원	(20) 950 ~ 999만원
(03) 100 ~ 149만원	(09) 400 ~ 449만원	(15) 700 ~ 749만원	(21) 1,000만원 이상(얼마:)
(04) 150 ~ 199만원	(10) 450 ~ 499만원	(16) 750 ~ 799만원	
(05) 200 ~ 249만원	(11) 500 ~ 549만원	(17) 800 ~ 849만원	

5. 산업 분류 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농업, 임업 및 어업	001	농업	002	임업	003	어업
광업	0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6	금속 광업				
제조업	010	식품품 제조업	0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011	음료 제조업	0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028	전기장비 제조업
	012	담배 제조업	0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4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4	제 1차 금속제조업	032	가구 제조업
	0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0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033	기타 제품제조업
	0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6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041	종합건설업	0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0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업	0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51	항공 운송업		
	050	수상운송업	0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055	숙박업	056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8	출판업	061	통신업	063	정보서비스업
	0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60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	064	금융업	065	보험 및 연금업	0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068	부동산업	0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0	연구개발업	0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1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085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86	보건업	0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4	협회 및 단체	095	수리업	0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97	가구내 고용활동	0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099	국제 및 외국기관				

6. 직업분류표(ILO, 『ISCO 1988』)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1	입법, 고위정부공무원	12	법인관리자	1228	경비, 위생 및 관련 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3	종합관리자
111	입법공무원	121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131	종합관리자
1110	입법공무원	1210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부서 관리자	1311	농림어업 종합관리자
112	고위정부공무원, 입법공무원 제외	122	생산부서 관리자	123	기타 부서 관리자	1312	광공업 종합관리자
1121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1221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1	재무 및 경영부서 관리자	1313	건설업 종합관리자
1122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22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2	인사 및 노사관계부서 관리자	1314	도소매업 종합관리자
113	전통적 총장	1223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3	판매부서 관리자	1315	음식점, 숙박업 종합관리자
1130	전통적 총장	1224	도·소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4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131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114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225	음식점, 숙박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5	구매부서 관리자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1141	정당 고위임직원	122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1318	경비, 위생 및 관련서비스업 종합관리자
1142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227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7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1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관리자
1143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부서 관리자		
2. 전문가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전문가	232	중고등학교 교사	2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률 전문가
211	물리학자, 화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21	중고등학교 교사, 직업훈련 제외	243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
2111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2322	성인 및 직업훈련기관 교사	2431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2112	기상학자	221	생명과학 전문가	233	초등 및 학령전 교육교사	2432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
2113	화학자	2211	생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31	초등교육 교사	244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2114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2212	약학자, 병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32	학령 전 교육 교사	2441	경제학자
212	수학자, 통계학자 및 관련 전문가	2213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4	특수학교 교사	2442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 전문가
2121	수학자 및 관련 전문가	222	보건 전문가(간호 제외)	2341	맹인학교 교사	2443	철학자,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
2122	통계학자	2221	의사	2342	농아학교 교사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213	컴퓨터 전문가	2222	치과의사	2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학교 교사	2445	심리학자
213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2223	수의사	23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전문가	2446	사회사업 전문가
2132	컴퓨터 프로그래머	2224	약사	2351	교육기법 전문가	245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
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	2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건전문가, 간호 제외	2352	장학사	2451	저술가, 기고가 및 기타 작가
214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223	간호 및 조산 전문가	2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전문가	2452	조각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2141	건축가, 도시 및 교통설계	2230	간호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2453	작곡가, 기악가 및 성악가
2142	토목기술자	2232	조산전문가	241	사업 전문가	2454	안무가 및 무용가
2143	전기기술자	23	교육전문가	2411	회계사	2455	영화, 무대 및 관련 배우 및 감독
2144	전자 및 통신기술자	231	대학 및 고등교육 교수	2412	인사 및 직업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
2145	기계기술자	2310	대학교수	2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전문가		
2148	지도제도사 및 측량사			2422	판사		
3. 기술자 및 준전문가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3143	항공기 조종사 및 관련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31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3144	항공 및 선박교통 관제사	331	초등교육 준교사	3432	법률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3111	화학 및 자연과학 기술자	315	안전 및 품질 검사원	3310	초등교육 준교사	3433	부기원
3112	토목공학 기술자	3151	건물 및 화재 감식원	332	학령전교육 준교사	3434	통계, 수학 및 관련 준전문가
3113	전기공학 기술자	3152	산업안전, 보건 및 품질 검사원	3320	학령전교육 준교사	34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 준전문가
3114	전자 및 전기통신공학 기술자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333	특수교육 준교사	344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115	기계공학 기술자	321	생명과학 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	3330	특수교육 준교사	3441	세관 및 국경 검사원
3116	화학공학 기술자	3211	생명과학 기술자	334	기타 교육 준전문가	3442	정부조세 공무원
3117	채광 및 금속공학 기술자	3212	농경 및 임업 기술자	3340	기타 교육 준전문가	3443	정부사회보장 공무원
3118	도안사	3213	농업 및 영림자문가	34	기타 준전문가	3444	정부허가 공무원
3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자	322	현대보건 준전문가, 간호 제외	341	금융, 판매 준전문가	34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12	컴퓨터 준전문가	3221	의료 보조원	3411	증권, 금융취급인 및 중개인	345	수사관
3121	컴퓨터 보조원	3222	위생사	3412	보험 대리인	3451	경찰수사관
3122	컴퓨터 조작원	3223	식이요법가 및 영양사	3413	부동산 대리인	3452	사립탐정
3123	산업용 로봇 조종원	3224	검안사 및 안경사	3414	여행상담원 및 조직원	346	사회사업 준전문가
313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원	3225	치과 보조원	3415	기술 및 상업판매 대리인	3460	사회사업 준전문가
3131	사진사 및 녹화, 녹음장비 조작원	3226	물리치료사 및 관련 준전문가	3416	구매대리인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3132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3227	준전문 의사	3417	평가사, 감정사 및 경매사	3471	장식가 및 상업 디자이너
3133	의료장비 조작원	3228	준전문 약사	3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	3472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아나운서
3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원	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현대보건 준전문가, 간호 제외	342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3473	대중연예 및 관련 음악인, 가수 및 무용수
314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자	323	간호, 조산 준전문가	3421	상품중개인	3474	어릿광대, 마술사, 곡예사 및 관련 준전문가
3141	선박 기술자	3231	간호 준전문가	3422	통관대리인	3475	운동가, 경기인 및 관련 준전문가
3142	선박갑판사관 및 도선사	3232	조산 준전문가	3423	고용대리인 및 노동계약인	348	종교 준전문가
		324	전통의료 개업의 및 신약 치료사	3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3480	종교 준전문가
		3241	전통의료 개업의				
		3242	신약치료사	343	관리 준전문가		

4. 사무직원

41 일반 사무직원	4122 통계 및 금융 사무원	4144 대필 및 관련 근로자	4213 마권 영업자 및 도박 진행자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413 재료기록 및 운송 사무원	419 기타 사무직원	4214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4111 속기타자수 및 타자원	4131 자계 사무원	4190 기타 사무직원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4112 워드프로세서 및 관련 조작원	4132 생산 사무원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422 고객안내 사무원
4113 자료입력기 조작원	4133 운송 사무원	42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4221 여행사 사원 및 관련 사무원
4114 계산기 조작원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4211 대금수납원 및 매표 사무원	4222 접대원 및 안내 사무원
4115 비서	4141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4212 금전출납원 및 기타 계산대 사무원	4223 전화교환사무원
412 계수 사무원	4142 우편 배달원 및 분류 사무원		
4121 회계 및 부기 사무원	4143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13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5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대인서비스 근로자	51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안업무 근로자
511 여행접대요원 및 관련 근로자	5131 보모	515 점성가, 예언자 및 관련 근로자	52 모델, 판매원 및 선진원
5111 여행수행원 및 여객접대원	5132 시설 개인보호 근로자	5151 점성가 및 관련 근로자	521 패션 및 기타 모델
5112 여객 차장	5133 가정 개인간호 근로자	5152 예언자, 수사가 및 관련 근로자	5210 패션 및 기타 모델
5113 여행 안내요원	5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516 보안업무 근로자	522 상점판매원 및 선진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514 기타 대인서비스 근로자	5161 소방관	5220 상점판매원 및 선진원
5121 가사 및 관련 근로자	5141 이·미용사 및 관련 근로자	5162 경찰관	523 매점 및 시장판매원
5122 조리사	5142 말벗 및 시중원	5163 교도관	5230 매점 및 시장 판매원
5123 웨이터 및 바텐더	5143 장의사 및 시체방부사	5164 보도관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12 출하용 동물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	613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6152 내륙 및 연안어업 근로자
611 출하용 채소 및 작물재배자	6121 낙농 및 가축생산자	6130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6153 원양어업 근로자
6111 전답작물 및 채소재배자	6122 가금생산자	614 임업 및 관련 근로자	6154 수렵원
6112 과수작물 재배자	6123 양봉가 및 양잠가	6141 임업 근로자 및 벌목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13 정원사, 원예 및 육묘재배자	6124 복합동물 생산자	6142 숲 급기원 및 관련 근로자	621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14 복합작물 재배자	6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출하용 동물 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	615 어업근로자 및 수렵원	6210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51 수생동식물 양식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3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11 도살원, 생선가공원 및 관련 식품가공원
711 광원, 발파원, 석재 부설원 및 조각원	721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31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7412 제빵원, 파스트리 및 과자제조원
7111 광원 및 채석 근로자	7211 금속 주형원 및 모형 제조원	7311 정밀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7413 낙농제품 제조원
7112 점화원 및 발파원	7212 용접원 및 용융절단원	7312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7414 과일, 채소 및 관련 저장원
7113 석재 절할원, 재단원 및 조각원	7213 판금 근로자	7313 장신구 및 귀금속 근로자	7415 식품 및 음료시험원 및 선별원
712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14 구조금속 준비원 및 건립원	732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16 담배가공원 및 담배제품 제조원
7121 전통적 재료의 대목수	7215 사무원 및 케이블 접속원	7321 연마원,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근로자	742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22 벽돌 조적원 및 석재 부설원	7216 수중 근로자	7322 유리가공원, 절단원, 연마원 및 완성원	7421 목재처리원
7123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근로자	722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323 유리조각원 및 식각원	7422 가구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124 목공 및 소목공	7221 대장원, 단조원 및 단조기근로자	7324 유리, 도기 및 관련 장식도장원	7423 목재공작기 조정원 및 조정조작원
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22 공구 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의 수공예 근로자	7424 바구니세공, 솔제조 및 관련 기능종사자
713 건물 완성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23 기계공구 조정원 및 조정조작원	7331 목재 및 관련재료의 수공예근로자	743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31 지붕잇기원	7224 금속연마원, 광택원 및 공구연삭원	7332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의 수공예근로자	7431 섬유준비원
7132 마루 설치원 및 타일 부착원	723 기계 정비원 및 설비원	734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32 직조원, 편직원 및 관련 근로자
7133 미장원	7231 자동차 정비원 및 설비원	7341 식자원 및 관련 근로자	7433 의복, 모자제조 및 관련 기능종사자
7134 단열근로자	7232 항공기 정비원 및 설비원	7342 연판제조원 및 전기제판원	7434 모피가공원 및 관련 근로자
7135 유리원	7233 농업용 또는 공업용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7343 인쇄 조판원 및 식각원	7435 식물, 가죽관련 옷본제조원 및 재단원
7136 연관원 및 배관원	724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7344 사진처리 및 관련 근로자	7436 채봉원, 자수원 및 관련 근로자
7137 건축 및 관련 전기원	7241 전기 정비원 및 설비원	7345 세분원 및 관련 근로자	7437 장식가구 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14 도장원, 건물구조 청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42 전자 정비원 및 수리원	7346 세분원 및 관련 근로자	744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 기능종사자
7141 건물 도장원 및 관련 근로자	7243 전자정비원 및 수리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41 원피가공원, 무두질원 및 양피원
7142 차량 도장원 및 관련 도장원	7244 전신, 전화설치원 및 수리원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42 가죽신발제조 관련 기능종사자
7143 건물구조 청결원	7245 전기배선원, 수리원 및 케이블접속원		

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직원	8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825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직원	828	조립원
811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직원					8281	일반기계 조립원
8111	채광장치 조직원	816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운전원	8251	인쇄기 조직원	8282	전기장비 조립원
8112	광석 및 석재가공장치 조직원	8161	발전장치 조직원	8252	제분용 기계 조직원	8283	전자장비 조립원
8113	유정 천공원 및 관련 근로자	8162	증기기관 및 보일러 조직원	8253	종이제품용 기계 조직원	8284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12	금속 가공장치 조직원	8163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직원	826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직원	8285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8121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직원			8261	섬유가공, 방사 및 권사기 조직원	8286	판지, 섬유 및 관련제품 조립원
8122	금속용해원, 주조원 및 압연기 조직원	81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	826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직원	829	기타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8123	금속가열처리장치 조직원	8171	자동조립라인 조직원	8263	제분기 조직원	8290	기타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8124	금속인발원 및 압출원	8172	산업용 로봇 조직원	8264	표백, 염색 및 세탁기 조직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직원
813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 조직원	82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8265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직원	831	철도 기관사 및 관련 근로자
8131	유리,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직원	821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직원	8266	신발제조 및 관련기계 조직원	8311	철도 기관사
8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 조직원	8211	기계공구 조직원	82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직원	8312	화물열차 차장, 신호원 및 구내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직원	8212	시멘트 및 기타 광물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직원	832	자동차 운전원
8141	목재가공장치 조직원	822	화학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1	육류 및 어류가공기계 조직원	8321	모터사이클 운전원
8142	펄프제조장치 조직원	8221	약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직원	8272	낙농용품 기계 조직원	8322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
8143	제지장치 조직원	8222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직원	8273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직원	8323	버스 및 시가전차 운전원
815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8223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직원	8274	제빵, 곡식 및 초콜릿제품용 기계 조직원	8324	중화물 트럭 운전원
8151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직원	8224	사진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5	과실, 채소 및 견과가공용 기계 조직원	833	농업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원
8152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직원	8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6	설탕생산기계 조직원	8331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원
8153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직원	8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7	차, 커피 및 코코아가공용 기계 조직원	8332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원
		8231	고무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8	양조, 주조 및 기타 음료용 기계 조직원	8333	크레인, 기중기 및 관련장치 운전원
8154	화학물 증류 및 반응기 조직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232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직원	8279	담배생산기계 조직원	8334	적재용 차량 운전원
8155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장치 조직원	824	나무제품용 기계 조직원			834	선박갑판 승무원 및 관련 근로자

9. 단순노무직근로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132	사무실, 호텔 및 기타 업소 조력원	916	환경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9311	채광 및 채굴 단순노무자
911	행상 및 관련 근로자			9161	쓰레기 수거원	9312	토목건설 및 보수 단순노무자
9111	식품 행상인	9133	세탁원 및 다림질원	9162	거리 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9313	건물건설 단순노무자
9112	비식품 행상인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3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자
9113	방문 및 전화 외관원	9141	건물관리원	92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321	단순 조립노무자
912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9142	차량, 유리창 및 관련 청소원	9211	농업관련 단순노무자	9322	수동포장 및 기타 제조업 노무자
9120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915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	9212	임업관련 단순노무자	933	운수업 관련 단순노무자 및 화물 취급원
		9151	배달원 및 수하물 운반원	9213	어업 및 수렵업 관련 단순노무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9152	수위, 경비원 및 관련직 근로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9331	수레 또는 자전거 운전원
9131	가사 조력원 및 청소원	9153	자동판매기 수급원, 계기 검수원 및 관련 종사자	931	광업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자	9332	동물견인차량 및 기계 운전원
				9333	화물취급원		

0. 군인

01	군인
011	군인
0110	군인